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운위 민간위원 수 확대, 참여비율 상향
및 안전 사전 공개 의무화 등〉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64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운위 민간위원 수 확대, 참여비율 상향 및 안건 사전 공개 의무 화 등(안 제9조 및 제10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7. 14.

다. 회 부 일 : 2025.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의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며, 이해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해 회의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임원 임명, 경영공시 등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부가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과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안건을 공개하며, 안건과 관련된 기관과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려 합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9조 및 제10조).

Ⅲ. 검토의견

1.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수 확대, 참여비율 상향 및 안건 사전 공개 의무화 등(안 제9조 및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에서 각각 1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5인
○ 민간위원이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 민간위원이 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
<신 설>	○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현행법¹⁾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민간위원을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으로 규정하고, 공운위 회의 개최시 민간위원이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운위 민간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공운위 운영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임.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1.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무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민간위원의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의 전문가 최소 1인을 포함하도록 하며, 민간위원이 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참여비율을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민간위원 정수 및 회의 참여비율을 확대하여 공운위에 민간위원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제고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특히 2025년 7월 기준 공운위의 민간위원은 총 8명으로, 학계 4명, 법조계 2명, 경제계 1명, 관(官)계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동계나 언론계의 민간위원이 부재한 상황으로, 언론계나 노동계의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현행법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공운위 민간위원 분야별 구성(2025.7. 기준)]

총계	학계	법조계	경제계	관(官)계	노동계	언론계
8	4	2	1	1	0	0

자료: 기획재정부

개정안은 민간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전문가를 최소 1인씩 의무적으로 포함하게 함으로써 공운위 운영의 대표성 및 민주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민간위원의 참여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여 정부의 의견보다는 민간부문의 의견을 보다 의미있게 반영하려는 취지로 입법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공운위 회의 시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경우, 필요한 정부위원의 참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공운위 회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할 경우 참석가능한 정부위원은 최대 6인임.

그런데 민간위원과 달리 정부위원 중 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 외에는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도록 되어 있음.²⁾ 따라서 개정안에 따를 경우, 당연직 위원인 2인(위원장인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 차관급 공무원)을 제외하면 지명 가능한 정부위원은 최대 4인(현행 민간위원 정원 11명 기준으로는 3인)으로 안건에 따라 필요한 정부위원의 참석이 다소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여러 부처 소관의 안건이 상정될 경우 주무기관의 공무원 참석이 제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민간위원 참석 비율을 상향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이로 인하여 민주적 다양성이 확보되는 긍정적 측면과 주무관청의 정부측 위원 참석이 제한될 수 있다는 한계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공운위 회의의 일시·장소·안건을 각 위원에게 사전 통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규정」³⁾에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상정안건 및 관련 자료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률에서 회의 전 통지 의무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회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회의 운영의 구체적·기술적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닌 각 공운위 위원에 통지하는 것에 그친다는 점에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운영위원회의 회의 통지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 일시·장소·상정안건 및 관련자료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방법은 서면(우편, 모사전송) 및 전자우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 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 계 및 <u>노동계</u>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 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u>11인</u> 이내의 사람	4. ----- ----- ----- ----- ---- <u>노동계에서 각각 1인을</u> <u>포함하여</u> ----- ----- ----- <u>15인</u>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하는 위원의 수가 회의 구성원의 <u>과반수가</u> 되도록 하여야 한다. <u><신 설></u> <u>② · ③ (생 략)</u> <u><신 설></u> <u>④ ~ ⑥ (생 략)</u>	----- --<u>3분의 2 이상이</u>----- -----. <u>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 <u>이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u>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u> <u>⑤ 운영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한 기관 및 이해당사자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u> <u>⑥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u>

문 의 처

02)6788-5157